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경 및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 따라 피해보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 나. 피해보상 대상을 농작물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확대 및 제명 변경 (제명변경 및 안 제3조)
- 다. 피해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라.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7조, 제8조)
- 마.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비(안 제9조)
- 바. 피해보상 지원대상자 제외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조 례 안 : 붙임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상 요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등 수확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내역서
4.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

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안전과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피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처리기간
				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개황	⑤ 피해자성명			
	⑥ 피 해 지 역			
	⑦ 피 해 내 용		⑧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	⑨ 피 해 면 적	(㎡)	⑩ 피해지역사진	(첨부)
피해액 감정	⑪ 피해액산정방법			
	※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⑫ 산 정 내 역			
	⑬ 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	⑭ 보상금 산정율			
	⑮ 피 해 보 상 금			
기타 조사 의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처리기간 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⑤ 피 해 지 역			
	⑥ 피 해 면 적		⑦ 가해 야생 동 물	
	⑧ 피 해 내 용			
	⑨ 피 해 보 상 금 산 정 내 역			
	⑩ 피 해 보 상 금			
기타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				

■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처 리 기 간
				10일
피 해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 피 해 보 상 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전문개정 2012.7.27.]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상황	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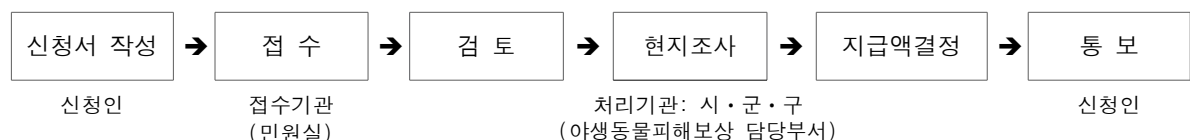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내역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

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소관 실·과·소		환경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이 성 화
	담 당 자	홍 성 빈 (480-5293)